추가약정서(담보제공 및 연대입보 신청서)

(소상공인 전환대출)

본인은 ㈜하나은행(이하 "은행")과 체결한 년 월 일자『대출거래약정』(이하 "대출약정")에 따른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이하 "공단")에 담보제공 및 연대입보를 신청하며 채무자(본인)가 은행과 체결한 대출약정은 공단의 예금담보와 연대입보를 기초로 한 대출임을 확인하고 아래의 내용에 동의합니다.

제1조(대출이자 및 보증수수료의 계산)

① 채무자(본인)가 은행 및 공단에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상환금은 아래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합니다.

1. 월별 분할상환금
2. 대출이자 : 대출원금잔액 × 대출이자율(연_____%) × 대출일수 ÷ 365일(윤년인 경우 366일)
3. 보증수수료 : 대출원금잔액 × 보증수수료율(연_____%) × 보증일수 ÷ 365일(윤년인 경우 366일)

② 채무자(본인)는 제1항에서 정한 상환금을 성실히 납부하기로 합니다.

제2조(대출 연체에 대한 특례)

대출에 관한 모든 사항은 채무자(본인)가 은행과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릅니다. 다만, 대출원금(분할상환금) 및 대출이자를 기일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은행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면제하는 것으로 합니다.

제3조(보증수수료 납입 및 계산 등)

① 은행은 대출이자 납입 기일에 대출이자와 공단이 수납하여야 할 보증수수료를 동시에 징수합니다.

② 공단은 대출약정에서 정한 대출이자 납입 기일 및 매 회차별 대출원리금 상환시 공단에 납부하여야 할 보증수수료를 동시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대출원리금 및 보증수수료 전부를 즉시 이행지체 처리할 수 있으며 채무자(본인)는 이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.

③ 보증수수료를 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수수료를 납입하기로 하며 지연수수료율은 연10%로 합니다.

④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지연배상금률은【보증수수료율 + (보증수수료율 x 지연수수료율)】로 합니다.

⑤ 보증수수료 · 지연배상금은 은행이 공단을 대신하여 징수하기로 합니다.

제4조(보증수수료 자동이체)

채무자(본인)는 대출이자 · 분할상환금 · 분할상환원리금을 자동이체 방식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보증수수료 등을 동일한 자동이체 출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수납처리 하여 줄 것을 신청하며 자동이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의 자동이체 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.

제5조(신청서의 효력)

① 대출약정에 대하여는 은행의 여신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원칙으로 합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신청서에서 정한 사항이 대출약정 및 은행의 여신거래 기본약관과 상충하는 경우 이 신청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.

제6조(정보제공)

공단과 은행은 대출약정 및 관련 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(본인)의 개인(신용)정보를 공유하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채무자(본인)는 이 신청서의 모든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며 이에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합니다.

20 년 월 일

채무자(대출받는자 : 본인) 성 명 : (인)

생 년 월 일 :

주 소 :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㈜하나은행 귀중

5-06-0737(1-1) (2016.11 개정)
(보존년한 : 완제일로부터 5년)
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16-약관-590 호

KEB 하나은행